#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판암역 르네블루 상업시설 분양공고**

René Bleu
SHINSUNG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 분양관련 주의 사항**
- 본 상업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업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상업시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공고일(2021.10.21) 기준입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한 상업시설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청** [ 2021–건축과–분양신고–04호(2021.10.20) ]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허가번호 : 2019–건축과–신축허가–99(2019.10.25)]
■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 위탁사(위탁자) ㈜민지씨앤디 / 시공사 : ㈜신성건설 / 분양대행사 : ㈜카사컨설팅
■ **분양대금 관리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케이비부동산신탁㈜], 등록번호[서울 080129]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864, 865번지
■ **대지면적** : 7,758.7㎡ ■ **연면적** : 53,635.62㎡ ■ **주차대수** : 416대 (법정 : 317대)
■ **공급규모** : 총 53,635.62㎡ 중 8,134.53㎡ (제2종 근린생활 시설 89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오피스텔 및 부속 용도 공용면적 (45,501.08㎡, 272실) 별도 광고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가. 『건축법』 제 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 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Ⅶ–0.213g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
■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준공 예정일** : 2024년 02월말 예정 (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점 예정일** : 2024년 04월말 예정 (입점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 분 | 용 도 |
|---|---|
| 지하4층 ~ 지하2층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펌프실 등 |
| 지하1층 | 주차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지상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지상2층 ~ 지상18층 | 업무시설 (오피스텔) |

**■ 대전 판암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건축물 허용용도**(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부내용)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
|---|---|---|---|---|---|
| 용 도 | 위 치 | 9블럭 1, 2롯트 준주거 용지 | | | |
| | 지정용도 | 없음 | | | |
| | 불허용도 | 주택 : 단독, 공동, 주상복합<br>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동 · 식물원, 종교집회장 / 장례식장(종합병원 내 부속 장례식장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r>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발전시설 | | | |
|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 소매시장(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의료시설 중 병원<br>업무시설 / 운동시설 | | | |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최고 층수 | | – | 최저 층수 | 2층 이상 |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 · 허가와 관련해서는 개별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 · 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분양을 받는 자에게 있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은 용도별 바닥면적, 시설기준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및 공급금액과 납부일정**

(단위 : ㎡, 금액 : 원)

| 구 분 | | | 분양면적 | | | | | 분양가격 | | | | 계약금 | 중도금1차 | 중도금2차 | 중도금3차 | 중도금4차 | 잔금 |
|---|---|---|---|---|---|---|---|---|---|---|---|---|---|---|---|---|---|
| 층 | 외관 | 호실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주차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분양가격 | 10% | 10% | 10% | 10% | 10% | 50% |
| | | | | | | | | | | | | 계약 시 | 2022. 04. 28 | 2022. 10. 28 | 2023. 04. 28 | 2023. 09. 28 | 입점(입주)시 |
| L층 | 1층 | L101호 | 54.3358 | 30.9434 | 29.7939 | 115.0731 | 17.0800 | 268,688,000 | 528,836,000 | 52,883,600 | 850,407,600 | 85,040,760 | 85,040,760 | 85,040,760 | 85,040,760 | 85,040,760 | 425,203,800 |
| L층 | 1층 | L102호 | 41.3137 | 23.5275 | 22.6535 | 87.4947 | 12.9866 | 197,843,000 | 389,397,000 | 38,939,700 | 626,179,700 | 62,617,970 | 62,617,970 | 62,617,970 | 62,617,970 | 62,617,970 | 313,089,850 |
| L층 | 1층 | L103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12,139,000 | 417,535,000 | 41,753,500 | 671,427,50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335,713,750 |
| L층 | 1층 | L104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12,139,000 | 417,535,000 | 41,753,500 | 671,427,50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335,713,750 |
| L층 | 1층 | L105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05,439,000 | 404,349,000 | 40,434,900 | 650,222,900 | 65,022,290 | 65,022,290 | 65,022,290 | 65,022,290 | 65,022,290 | 325,111,450 |
| L층 | 1층 | L106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16,604,000 | 426,324,000 | 42,632,400 | 685,560,400 | 68,556,040 | 68,556,040 | 68,556,040 | 68,556,040 | 68,556,040 | 342,780,200 |
| L층 | 1층 | L107호 | 39.0000 | 22.2099 | 21.3848 | 82.5947 | 12.2593 | 186,763,000 | 367,591,000 | 36,759,100 | 591,113,100 | 59,111,310 | 59,111,310 | 59,111,310 | 59,111,310 | 59,111,310 | 295,556,550 |
| L층 | 1층 | L108호 | 45.8250 | 26.0967 | 25.1272 | 97.0488 | 14.4047 | 231,373,000 | 455,392,000 | 45,539,200 | 732,304,200 | 73,230,420 | 73,230,420 | 73,230,420 | 73,230,420 | 73,230,420 | 366,152,100 |
| L층 | 1층 | L109호 | 45.8250 | 26.0967 | 25.1272 | 97.0488 | 14.4047 | 233,759,000 | 460,087,000 | 46,008,700 | 739,854,700 | 73,985,470 | 73,985,470 | 73,985,470 | 73,985,470 | 73,985,470 | 369,927,350 |
| L층 | 1층 | L110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07,672,000 | 408,745,000 | 40,874,500 | 657,291,500 | 65,729,150 | 65,729,150 | 65,729,150 | 65,729,150 | 65,729,150 | 328,645,750 |
| L층 | 1층 | L111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18,838,000 | 430,719,000 | 43,071,900 | 692,628,900 | 69,262,890 | 69,262,890 | 69,262,890 | 69,262,890 | 69,262,890 | 346,314,450 |
| L층 | 1층 | L112호 | 40.3000 | 22.9502 | 22.0977 | 85.3479 | 12.6680 | 209,770,000 | 412,873,000 | 41,287,300 | 663,930,300 | 66,393,030 | 66,393,030 | 66,393,030 | 66,393,030 | 66,393,030 | 331,965,150 |
| L층 | 1층 | L113호 | 47.4500 | 27.0221 | 26.0182 | 100.4902 | 14.9155 | 259,337,000 | 510,430,000 | 51,043,000 | 820,810,000 | 82,081,000 | 82,081,000 | 82,081,000 | 82,081,000 | 82,081,000 | 410,405,000 |
| L층 | 1층 | L114호 | 47.4500 | 27.0221 | 26.0182 | 100.4902 | 14.9155 | 259,337,000 | 510,430,000 | 51,043,000 | 820,810,000 | 82,081,000 | 82,081,000 | 82,081,000 | 82,081,000 | 82,081,000 | 410,405,000 |
| L층 | 1층 | L115호 | 46.8000 | 26.6519 | 25.6618 | 99.1137 | 14.7112 | 267,964,000 | 527,412,000 | 52,741,200 | 848,117,200 | 84,811,720 | 84,811,720 | 84,811,720 | 84,811,720 | 84,811,720 | 424,058,600 |
| L층 | 1층 | L116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56,799,000 | 505,437,000 | 50,543,700 | 812,779,700 | 81,277,970 | 81,277,970 | 81,277,970 | 81,277,970 | 81,277,970 | 406,389,850 |
| L층 | 1층 | L117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52,333,000 | 496,646,000 | 49,664,600 | 798,643,600 | 79,864,360 | 79,864,360 | 79,864,360 | 79,864,360 | 79,864,360 | 399,321,800 |
| L층 | 1층 | L118호 | 29.6000 | 16.8568 | 16.2306 | 62.6873 | 9.3045 | 77,038,000 | 151,626,000 | 15,162,600 | 243,826,600 | 24,382,660 | 24,382,660 | 24,382,660 | 24,382,660 | 24,382,660 | 121,913,300 |
| L층 | 1층 | L119호 | 37.0185 | 21.0815 | 20.2983 | 78.3983 | 11.6365 | 96,345,000 | 189,627,000 | 18,962,700 | 304,934,700 | 30,493,470 | 30,493,470 | 30,493,470 | 30,493,470 | 30,493,470 | 152,467,350 |
| L층 | 1층 | L120호 | 35.3400 | 20.1256 | 19.3779 | 74.8435 | 11.1088 | 202,348,000 | 398,264,000 | 39,826,400 | 640,438,400 | 64,043,840 | 64,043,840 | 64,043,840 | 64,043,840 | 64,043,840 | 320,219,200 |
| L층 | 1층 | L121호 | 45.2600 | 25.7749 | 24.8174 | 95.8522 | 14.2271 | 266,215,000 | 523,968,000 | 52,396,800 | 842,579,800 | 84,257,980 | 84,257,980 | 84,257,980 | 84,257,980 | 84,257,980 | 421,289,900 |
| L층 | 1층 | L122호 | 48.1000 | 27.3922 | 26.3746 | 101.8668 | 15.1198 | 275,408,000 | 542,063,000 | 54,206,300 | 871,677,300 | 87,167,730 | 87,167,730 | 87,167,730 | 87,167,730 | 87,167,730 | 435,838,650 |
| L층 | 1층 | L123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45,634,000 | 483,461,000 | 48,346,100 | 777,441,100 | 77,744,110 | 77,744,110 | 77,744,110 | 77,744,110 | 77,744,110 | 388,720,550 |
| L층 | 1층 | L124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23,304,000 | 439,510,000 | 43,951,000 | 706,765,000 | 70,676,500 | 70,676,500 | 70,676,500 | 70,676,500 | 70,676,500 | 353,382,500 |
| L층 | 1층 | L125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34,468,000 | 461,486,000 | 46,148,600 | 742,102,600 | 74,210,260 | 74,210,260 | 74,210,260 | 74,210,260 | 74,210,260 | 371,051,300 |
| L층 | 1층 | L126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23,304,000 | 439,510,000 | 43,951,000 | 706,765,000 | 70,676,500 | 70,676,500 | 70,676,500 | 70,676,500 | 70,676,500 | 353,382,500 |
| L층 | 1층 | L127호 | 48.1000 | 27.3922 | 26.3746 | 101.8668 | 15.1198 | 250,371,000 | 492,784,000 | 49,278,400 | 792,433,400 | 79,243,340 | 79,243,340 | 79,243,340 | 79,243,340 | 79,243,340 | 396,216,700 |
| L층 | 1층 | L128호 | 45.6062 | 25.9720 | 25.0071 | 96.5854 | 14.3359 | 237,390,000 | 467,235,000 | 46,723,500 | 751,348,500 | 75,134,850 | 75,134,850 | 75,134,850 | 75,134,850 | 75,134,850 | 375,674,250 |
| L층 | 1층 | L129호 | 42.9000 | 24.4309 | 23.5233 | 90.8542 | 13.4853 | 212,139,000 | 417,535,000 | 41,753,500 | 671,427,50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67,142,750 | 335,713,750 |
| L층 | 1층 | L130호 | 39.4350 | 22.4576 | 21.6233 | 83.5160 | 12.3961 | 205,268,000 | 404,011,000 | 40,401,100 | 649,680,100 | 64,968,010 | 64,968,010 | 64,968,010 | 64,968,010 | 64,968,010 | 324,840,050 |
| L층 | 1층 | L131호 | 42.7170 | 24.3267 | 23.4229 | 90.4666 | 13.4277 | 222,351,000 | 437,635,000 | 43,763,500 | 703,749,500 | 70,374,950 | 70,374,950 | 70,374,950 | 70,374,950 | 70,374,950 | 351,874,750 |
| L층 | 1층 | L132호 | 48.0428 | 27.3597 | 26.3433 | 101.7457 | 15.1019 | 237,569,000 | 467,588,000 | 46,758,800 | 751,915,800 | 75,191,580 | 75,191,580 | 75,191,580 | 75,191,580 | 75,191,580 | 375,957,900 |
| L층 | 1층 | L133호 | 41.3548 | 23.5509 | 22.6759 | 87.5817 | 12.9995 | 107,630,000 | 211,840,000 | 21,184,000 | 340,654,000 | 34,065,400 | 34,065,400 | 34,065,400 | 34,065,400 | 34,065,400 | 170,327,000 |
| 1층 | 1층 | 101호 | 55.4000 | 31.5495 | 30.3774 | 117.3269 | 17.4145 | 288,369,000 | 567,572,000 | 56,757,200 | 912,698,200 | 91,269,820 | 91,269,820 | 91,269,820 | 91,269,820 | 91,269,820 | 456,349,100 |
| 1층 | 1층 | 102호 | 49.8980 | 28.4162 | 27.3605 | 105.6747 | 15.6850 | 272,716,000 | 536,765,000 | 53,676,500 | 863,157,500 | 86,315,750 | 86,315,750 | 86,315,750 | 86,315,750 | 86,315,750 | 431,578,750 |
| 1층 | 1층 | 103호 | 53.0000 | 30.1827 | 29.0614 | 112.2441 | 16.6601 | 275,876,000 | 542,985,000 | 54,298,500 | 873,159,500 | 87,315,950 | 87,315,950 | 87,315,950 | 87,315,950 | 87,315,950 | 436,579,750 |
| 1층 | 1층 | 104호 | 33.0000 | 18.7930 | 18.0946 | 69.8877 | 10.3733 | 171,772,000 | 338,085,000 | 33,808,500 | 543,665,50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271,832,750 |
| 1층 | 1층 | 105호 | 33.0000 | 18.7930 | 18.0946 | 69.8877 | 10.3733 | 171,772,000 | 338,085,000 | 33,808,500 | 543,665,50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271,832,750 |
| 1층 | 1층 | 106호 | 33.0000 | 18.7930 | 18.0946 | 69.8877 | 10.3733 | 166,619,000 | 327,942,000 | 32,794,200 | 527,355,200 | 52,735,520 | 52,735,520 | 52,735,520 | 52,735,520 | 52,735,520 | 263,677,600 |
| 1층 | 1층 | 107호 | 27.9000 | 15.8886 | 15.2984 | 59.0870 | 8.7701 | 152,487,000 | 300,127,000 | 30,012,700 | 482,626,700 | 48,262,670 | 48,262,670 | 48,262,670 | 48,262,670 | 48,262,670 | 241,313,350 |
| 1층 | 1층 | 108호 | 27.9000 | 15.8886 | 15.2984 | 59.0870 | 8.7701 | 152,487,000 | 300,127,000 | 30,012,700 | 482,626,700 | 48,262,670 | 48,262,670 | 48,262,670 | 48,262,670 | 48,262,670 | 241,313,350 |
| 1층 | 1층 | 109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1층 | 1층 | 110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1층 | 1층 | 111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1층 | 1층 | 112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75,207,000 | 344,847,000 | 34,484,700 | 554,538,70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277,269,350 |
| 1층 | 1층 | 113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75,207,000 | 344,847,000 | 34,484,700 | 554,538,70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277,269,350 |
| 1층 | 1층 | 114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75,207,000 | 344,847,000 | 34,484,700 | 554,538,70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55,453,870 | 277,269,350 |
| 1층 | 2층 | 115호 | 52.2500 | 29.7556 | 28.6501 | 110.6557 | 16.4244 | 133,870,000 | 263,484,000 | 26,348,400 | 423,702,400 | 42,370,240 | 42,370,240 | 42,370,240 | 42,370,240 | 42,370,240 | 211,851,200 |
| 1층 | 2층 | 116호 | 52.2500 | 29.7556 | 28.6501 | 110.6557 | 16.4244 | 133,870,000 | 263,484,000 | 26,348,400 | 423,702,400 | 42,370,240 | 42,370,240 | 42,370,240 | 42,370,240 | 42,370,240 | 211,851,200 |
| 1층 | 2층 | 117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18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19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20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21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22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23호 | 45.6500 | 25.9970 | 25.0312 | 96.6782 | 14.3497 | 116,960,000 | 230,203,000 | 23,020,300 | 370,183,300 | 37,018,330 | 37,018,330 | 37,018,330 | 37,018,330 | 37,018,330 | 185,091,650 |
| 1층 | 2층 | 124호 | 45.6500 | 25.9970 | 25.0312 | 96.6782 | 14.3497 | 116,960,000 | 230,203,000 | 23,020,300 | 370,183,300 | 37,018,330 | 37,018,330 | 37,018,330 | 37,018,330 | 37,018,330 | 185,091,650 |
| 1층 | 2층 | 125호 | 47.8500 | 27.2499 | 26.2375 | 101.3374 | 15.0412 | 116,467,000 | 229,232,000 | 22,923,200 | 368,622,200 | 36,862,220 | 36,862,220 | 36,862,220 | 36,862,220 | 36,862,220 | 184,311,100 |
| 1층 | 2층 | 126호 | 47.8500 | 27.2499 | 26.2375 | 101.3374 | 15.0412 | 118,919,000 | 234,057,000 | 23,405,700 | 376,381,700 | 37,638,170 | 37,638,170 | 37,638,170 | 37,638,170 | 37,638,170 | 188,190,850 |
| 1층 | 2층 | 127호 | 61.1875 | 34.8454 | 33.5508 | 129.5837 | 19.2338 | 148,930,000 | 293,127,000 | 29,312,700 | 471,369,700 | 47,136,970 | 47,136,970 | 47,136,970 | 47,136,970 | 47,136,970 | 235,684,850 |
| 1층 | 2층 | 128호 | 60.5000 | 34.4538 | 33.1739 | 128.1277 | 19.0177 | 155,007,000 | 305,087,000 | 30,508,700 | 490,602,700 | 49,060,270 | 49,060,270 | 49,060,270 | 49,060,270 | 49,060,270 | 245,301,350 |
| 1층 | 2층 | 129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0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1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2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3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4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5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9,779,000 | 235,750,000 | 23,575,000 | 379,104,0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37,910,400 | 189,552,000 |
| 1층 | 2층 | 136호 | 46.7500 | 26.6234 | 25.6343 | 99.0078 | 14.6955 | 116,185,000 | 228,677,000 | 22,867,700 | 367,729,700 | 36,772,970 | 36,772,970 | 36,772,970 | 36,772,970 | 36,772,970 | 183,864,850 |
| 1층 | 2층 | 137호 | 51.1500 | 29.1292 | 28.0471 | 108.3262 | 16.0786 | 117,947,000 | 232,144,000 | 23,214,400 | 373,305,400 | 37,330,540 | 37,330,540 | 37,330,540 | 37,330,540 | 37,330,540 | 186,652,700 |
| 1층 | 1층 | 138호 | 45.7800 | 26.0710 | 25.1025 | 96.9535 | 14.3906 | 238,294,000 | 469,015,000 | 46,901,500 | 754,210,500 | 75,421,050 | 75,421,050 | 75,421,050 | 75,421,050 | 75,421,050 | 377,105,250 |
| 1층 | 1층 | 139호 | 49.0000 | 27.9048 | 26.8681 | 103.7729 | 15.4027 | 255,055,000 | 502,004,000 | 50,200,400 | 807,259,400 | 80,725,940 | 80,725,940 | 80,725,940 | 80,725,940 | 80,725,940 | 403,629,700 |
| 1층 | 1층 | 140호 | 51.1180 | 29.1109 | 28.0295 | 108.2584 | 16.0685 | 279,384,000 | 549,888,000 | 54,988,800 | 884,260,800 | 88,426,080 | 88,426,080 | 88,426,080 | 88,426,080 | 88,426,080 | 442,130,400 |
| 1층 | 1층 | 141호 | 33.0000 | 18.7930 | 18.0947 | 69.8878 | 10.3734 | 163,184,000 | 321,181,000 | 32,118,100 | 516,483,100 | 51,648,310 | 51,648,310 | 51,648,310 | 51,648,310 | 51,648,310 | 258,241,550 |
| 1층 | 1층 | 142호 | 33.0000 | 18.7930 | 18.0947 | 69.8878 | 10.3734 | 163,184,000 | 321,181,000 | 32,118,100 | 516,483,100 | 51,648,310 | 51,648,310 | 51,648,310 | 51,648,310 | 51,648,310 | 258,241,550 |
| 1층 | 1층 | 143호 | 33.0000 | 18.7930 | 18.0947 | 69.8878 | 10.3734 | 171,772,000 | 338,085,000 | 33,808,500 | 543,665,50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271,832,750 |
| 1층 | 1층 | 144호 | 33.0000 | 18.7930 | 18.0947 | 69.8878 | 10.3734 | 171,772,000 | 338,085,000 | 33,808,500 | 543,665,50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54,366,550 | 271,832,750 |
| 1층 | 1층 | 145호 | 44.0000 | 25.0573 | 24.1265 | 93.1838 | 13.8311 | 217,578,000 | 428,241,000 | 42,824,100 | 688,643,100 | 68,864,310 | 68,864,310 | 68,864,310 | 68,864,310 | 68,864,310 | 344,321,550 |
| 1층 | 1층 | 146호 | 33.3000 | 18.9639 | 18.2593 | 70.5232 | 10.4676 | 182,001,000 | 358,216,000 | 35,821,600 | 576,038,600 | 57,603,860 | 57,603,860 | 57,603,860 | 57,603,860 | 57,603,860 | 288,019,300 |
| 1층 | 1층 | 147호 | 33.3000 | 18.9639 | 18.2593 | 70.5232 | 10.4676 | 182,001,000 | 358,216,000 | 35,821,600 | 576,038,600 | 57,603,860 | 57,603,860 | 57,603,860 | 57,603,860 | 57,603,860 | 288,019,300 |
| 1층 | 1층 | 148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206,127,000 | 405,702,000 | 40,570,200 | 652,399,200 | 65,239,920 | 65,239,920 | 65,239,920 | 65,239,920 | 65,239,920 | 326,199,600 |
| 1층 | 1층 | 149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9,942,000 | 393,530,000 | 39,353,000 | 632,825,000 | 63,282,500 | 63,282,500 | 63,282,500 | 63,282,500 | 63,282,500 | 316,412,500 |
| 1층 | 1층 | 150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206,127,000 | 405,702,000 | 40,570,200 | 652,399,200 | 65,239,920 | 65,239,920 | 65,239,920 | 65,239,920 | 65,239,920 | 326,199,600 |
| 1층 | 1층 | 151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9,942,000 | 393,530,000 | 39,353,000 | 632,825,000 | 63,282,500 | 63,282,500 | 63,282,500 | 63,282,500 | 63,282,500 | 316,412,500 |
| 1층 | 1층 | 152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1층 | 1층 | 153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1층 | 1층 | 154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89,636,000 | 373,246,000 | 37,324,600 | 600,206,600 | 60,020,660 | 60,020,660 | 60,020,660 | 60,020,660 | 60,020,660 | 300,103,300 |
| 1층 | 1층 | 155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1층 | 1층 | 156호 | 39.6000 | 22.5516 | 21.7138 | 83.8654 | 12.4479 | 195,821,000 | 385,416,000 | 38,541,600 | 619,778,60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61,977,860 | 309,889,300 |

**■ 근린생활시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유의사항**
- 상기 총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 금액에는 각 호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호당 계약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위치 지정이나 구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수분양자(입점자)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인 · 허가 조건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수분양자(입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일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점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은 은행 영업일기준으로 함)
-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 대지지분은 점포(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유대지는 계약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고, 분양사업자는 계약자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으며, 대지공유분의 2% 이내의 증감에 대해서는 분양금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례로 배분하며 계약 시의 공용면적과 사용검사시의 실제 사용면적은 동일하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3% 이내의 공용면적 증감은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전체 공용으로 하고, 해당 용도별 시설이 층별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공용 면적은 층별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점포(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점포(호실)별 분양가격(근린생활시설)은 입점 점포 위치별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공용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양사업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세부 사항은 분양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분양광고일(2021년 10월 2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 1인당 1실씩 청약가능(단, 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호실은 분양 홍보관에서 신청 호실별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분양(청약) 일정 및 청약 신청금**

1) 청약 일정

| 구 분 | 청약일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계약일 | 청약장소 | 당선자 선정 |
|---|---|---|---|---|---|
| 근린생활시설 | 2021년 10월 26일<br>9:00~18:00 | 2021년 10월 27일<br>11:00~12:00 | 2021년 10월 28일<br>09:00~18:00 | 분양 홍보관<br>현장 청약 | 분양 홍보관에서 청약자 입회 하에<br>호실별로 공개 추첨 |

2) 청약 신청금 납부 방법

| 구 분 | 청약신청금 | 납부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비 고 |
|---|---|---|---|---|---|
| 근린생활시설 | 일금 일천만원(₩10,000,000) | 349401–04–308721 | 국민은행 | 케이비부동산신탁㈜ | 은행 무통장 입금<br>(분양홍보관 현장 수납 불가) |

※ 청약 신청 시 신청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구비서류**

| 근린생활시설 | 구 분 |
|---|---|
| 본인신청시<br>(배우자포함) |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 사무실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 신청자의 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br>• 본인 확인증표: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br>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 세대시 주민등록등본, 분리 세대시 가족관계 증명서)<br>• 청약 신청금 납입영수증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인 명의) |
| 법인 신청시 |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 사무실 비치) •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br>• 청약 신청금 납입영수증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 법인 명의)<br>•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제3자<br>대리 신청시<br>추가 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해야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급 신청용) 1통<br>(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 또는 낙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자, 위탁사, 분양대행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 기간 | 환불 방법 | 구비서류 |
|---|---|---|
| 당첨자 발표 후 10일 이내<br>(2021년 10월 29일,<br>12:00시 이후) | 청약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br>환불기간에 자동이체 (환불계좌<br>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br>환불 가능) | • 청약 신청서, 주민등록증(신분증), 청약 신청시 사용한 인장이 날인된 환불 신청서 및 인장<br>• 제3자 대리 환불 추가 구비사항: 상기 구비서류 외에 제3자 신분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br>•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증명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br>(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환불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br>※ 환불시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의 제출로 인한 환불 지연, 미지급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 지지 않으니 환불 계좌 확인 바람.<br>※ 환불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 최초 영업일 기준으로 함. |

**■ 청약 시 유의 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자, 위탁사, 분양대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당첨 청약 신청금과 당첨 후 미계약 청약 신청금은 환불 기간에 반환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호실별로 경합이 있을 경우,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청약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 미계약 물량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당사에서 개별 호실로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상업시설의 공급지역 대전광역시 동구는「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19일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근린생활시설 호실의 10%는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본 건축물 건설지역(대전광역시) 거주자(분양광고일 기준)를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으로 하여 모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을 신청한 자 중 분양 받을 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분양신청을 한 자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제6조의2(거주자 우선분양)제1항에 따른 거주자 우선분양은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1) 계약 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1년 10월 28일(금요일) 09:00 ~ 18:00
- 계약장소 : 당사 분양 홍보관

2) 분양대금 납부 일정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 | | 잔금 |
|---|---|---|---|---|---|---|
| 납부 일정 | 10%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0% |
| | 계약 시 | 2022. 04. 28(목) | 2022. 10. 28(금) | 2023. 04. 28(금) | 2023. 09. 28(목) | 입점 시 |

- 분양대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의 잔금은 입점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공정에 따라 입점 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앞당겨진 입점 지정기간에 잔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 시 구비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 본인 계약시 |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br>•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분양계약서 인지대 납부영수증 |
| 법인 계약시 |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법인인감(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br>•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분양계약서 인지대 납부영수증 |
| 제3자<br>대리 계약시<br>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br>•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분양사무실 비치)<br>•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분양계약서 인지대 납부영수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은 공급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당첨자와 분양 계약 체결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국민은행 | 349401–04–308721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시 : L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L101홍길동)
- 중도금 납부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계약금의 현장 수납은 불가하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 진 청약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 행위)는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자, 위탁사, 분양대행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실 구획(호수 및 면적 조정),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점 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 안내, 유의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 본 상업시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위탁사가 부담하여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복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탁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현금으로 직접 납부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위탁사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시행자(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분양사업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 위탁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탁사 ㈜민지씨앤디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위탁사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이상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분양가격의 10%) 부족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분양사업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 위탁사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분양사업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 위탁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사는 중도금 대출 알선만 할 뿐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인한 신용등급 변동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예정일** : 2024년 04월말 예정 (사용승인 이후)
- 입점 예정일은 2024년 04월말 예정입니다. 입점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점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점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유상 선택옵션 품목 계약**

1)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금액 : 원, vat 포함 가격)

| 해당 호실 | 실수 | 제조사 | 모델명 | 설치 대수 | 금액 | 비 고 |
|---|---|---|---|---|---|---|
| 104, 105, 106, 107, 108, 141, 142, 143, 144, L118, L120호 | 11실 | 엘지전자 | TW0900A2SR | 실당 1대 | 5,137,000 | |
| 109, 110, 111, 112, 113, 114, 133, 146, 147, L119호 | 10실 | | TW1001A2SR | 실당 1대 | 5,471,000 | |
| L102, L103, L104, L105, L106, L107, L108, L109, L110, L111호, L112, L116, L117, L121, L123, L124, L125, L126, L129, L130호, L131, 145,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호 | 31실 | | TW1301A2SR | 실당 1대 | 6,142,000 | |
| L101, L113, L114, L115, L122, L127, L128, 132, 101, 102, 103호,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9, 130, 131호, 132, 133, 134, 135, 136, 138, 139, 140호 | 32실 | | TW1451A9SR | 실당 1대 | 6,213,000 | |
| 115, 116, 137호 | 3실 | | TW0900A2SR | 실당 2대 | 9,813,000 | |
| 127, 128호 | 2실 | | TW1101A2SR | 실당 2대 | 10,749,000 | |

- 해당 호실(점포) 면적규모에 의거 시스템 냉난방기 용량에 따른 모델과 공급가격이 다르며, 면적규모에 따라 일부 5개 호실은 2대가 설치됩니다.
- 냉난방용량은 기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모델이므로 입점자의 업종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입점자가 추가로 증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별도 냉난방 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추후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추가 유상 선택옵션 납부 조건 및 납부 계좌**

| 해당 유상 선택옵션 품목 | 납부 조건 | | | 납부 계좌 | | |
|---|---|---|---|---|---|---|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 계약시 10% | 없음 | 입주지정일 90% | 국민은행 | 009901–04–169284 | ㈜민지씨앤디 |

**■ 추가 유상 선택옵션 품목 관련 유의 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상업시설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상업시설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케이비부동산신탁㈜와 시공사 ㈜신성건설과는 무관하며, 위탁사 ㈜민지씨앤디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되므로, 케이비부동산신탁㈜와 ㈜신성건설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통적 유의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 분양 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허용범위 내 변동은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호실)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대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입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태료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가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위탁사에서 알선할 예정이며, 계약자의 신용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점포에 대한 점포구획(호수 및 면적조정)은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점포를 임의 분할하여 매매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동 근린생활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하여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상업시설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이며,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자, 위탁사, 분양대행사, 시공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 상업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상업시설 대지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 시 상업시설의 세부 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분양 홍보관(견본 주택)내 건립 업무시설, 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개 공지, 공공 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기타 통행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 집기 비품 등(이삿짐)을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 경계선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관(견본 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 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설계 변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양사업자(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분양 홍보관(견본 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 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 차량 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소음 및 호실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대전 판암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지침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 대전광역시 등 관할 관청 및 관리단과 협의하여 승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옥외 광고물 등 관계 법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련 고시 규정과 분양사업자가 제시하는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간판을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설치함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 및 분양사업자의 손해 발생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건물의 외관 보호를 위하여 설치 위치를 분양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 · 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계약에 의한 본 분양 물건 취득과 관련(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등)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분양사업자는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 보상 금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 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집광고일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인근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지에 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으로 인접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남측도로 폭은 50m, 북측도로 폭은 20m 도로로 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로는 1개소(북측)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 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이나,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 각 실의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각 점포별로 대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인접한 호실과 바닥 높이와 층고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명칭이 L(Land 약자)로 시작하는 호실은 설계도면 상 지하 1층에 해당하나 외관상 지상 1층과 동일한 상태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카다로그 이미지(투시도, 조감도 등) 상에 표현된 조경시설 및 옥상 등에 기계 설비(냉각탑, 급배기팬, 급배기구 등) 표현은 없으나, 추후 공사 완료시에는 설치되오니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점포(호실) 전면의 조경 공간에 식재가 이루어질 경우 시야가 일부 가려지는 점포(호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대지 내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투입구 개수 및 배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냄새 및 미관 저해에 대하여 분양사업자나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외부 설계도면 상 1층(외관상 지상 2층) 옥상 정원의 연결을 위한 브릿지(연결통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점포 중 점포간 바닥 레벨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일부 후면부 진입 계단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접한 점포(2개 점포 이상)를 분양 받는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 등으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부 복도의 바닥 패턴은 향후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점포(호실)의 출입구 위치 및 개수, 개폐 방향(창호 포함)은 관계 법령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 그래픽(CG)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분양홍보관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지 주변 현황,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수경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향후 풍압 · 풍동 등의 구조 시험,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 결과 및 입점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재질 ·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배치상 기계 · 전기실, 급배기구 오수스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호실 전용 면적 천정 내부 공간이 기계 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의 벽체, 천정, 바닥 등에는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 ·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외부 색채, 그래픽, 경관 조명 계획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점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 수경시설, 외부시설물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소방시설점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개별 점포 전용공간의 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이 없으며, 전등을 포함한 일체의 인테리어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개별 점포는 도시가스 배관이 점포별 입구에 밸브 마감(계량기 설치 및 내부 배관은 입점자 공사분임)이며, 추후 사용량 증설에 따른 공사분은 입점자 공사분임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개별 점포(호실)별 급,배수시설이 가능하도록 배관을 설치하며, 급,배수시설의 추후 연결은 입점자 공사분으로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개별 점포(호실)별 전기, 급수 등은 기본 용량만 공급하며, 추후 사용량 증설에 따른 공사분은 입점자 공사분임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단지 중앙, 폭 9.5m)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건물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 주체는 입점자의 부담입니다.
- 분양 홍보관(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분양사업자(건축주)의 결정에 따르고, 제반권리를 분양사업자(건축주)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자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점포(호실)별 유의 사항]**
- 각 점포(호실)의 시설 기준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입점 업체의 특성에 따른 내장재 변경과 진열대, 간판 및 추가 설치되는 공사는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점포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점포별 입구에 밸브 마감(점포내 가스배관 미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점포 내부 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부담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LNG), 급수, 급탕, 오배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 및 인허가 사항, 시설분담금을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환기(배기)는 자연환기(배기)이므로 환기(배기)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점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고, 필요시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계량기 및 배관을 연결, 설치하여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점포(호실)별 창호,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다를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점포(호실) 내부 기둥의 위치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추후 설계 진행에 따라 점포(호실) 출입구의 위치,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사양은 점포(호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후 입점자에 의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및 난간대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점포(호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점포(호실)별 개별적인 공사 시 소방 관련 법규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셔야 합니다.
- 점포(호실)별 개별적인 공사 시 설치될 유리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및 소방관련 법규, 설계 풍하중에 적합해야 됩니다.
- 각 점포(호실)별 출입구 위치 및 벽체 위치 변경 시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셔야 합니다.
- 일부 점포(호실)의 경우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 및 대피공간이 설치될 수 있고,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점포(호실)는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점포(호실)은 비상구나 부속실 또는 발코니가 해당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천정고는 추후 설계 및 시공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방화 구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점포(호실) 앞에 설치되는 방화 셔터 및 관련 설치물은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호실)간 간막이벽 해체 시 방화 구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지구 여건 유의사항**
- 본 건축물의 주소, 건축물명 및 호실 명칭은 관할 관청의 요구 또는 시행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당 사업지구가 속한 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합원의 환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건축물을 착공할 수가 있기에 준공 또는 입주 후 본 지구 및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 먼지, 교통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암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업장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위반행위 및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안내 사항**

건축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명품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 위탁자,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차후 임대차 계약 시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에 신고하여 관계법령에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①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 (예: 내부 복층, 냉동창고 등 창고 및 테라스 등의 증축)
②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③ 건축법 제35조(유지 · 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등 (예 : 공용복도를 막아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통로폭 미확보)
④ 세로형 간판, 옥상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건물 차양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⑤ 2층 이상의 업소 창문을 활용하여 문자 등을 표시하는 행위
⑥ 건물 외벽을 이용한 현수막 부착 행위
⑦ 건물 밖에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집합건물 관리규약 안내**

○ 제00조 관리단 · 구분소유자 · 임차인 · 관리인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합건축물을 유지 · 관리한다.
①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와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증축, 물건 적치 등) 불법 광고행위 등의 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인은 본 건물에 대한 건축법 등의 위반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 그 점검결과와 조치계획을 관리단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인과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관리단 · 구분소유자 · 임차인 · 관리인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관계 업무에 협조한다.

**■ 관리형토지신탁**
-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민지씨앤디 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됨에 따라 본 사업이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민지씨앤디가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주)민지씨앤디입니다.
- 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해약금반환, 입점(입주)지연 시 지체상금, 하자 보수 등)는 "신탁계약" 위탁자 겸 수익자인 ㈜민지씨앤디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민지씨앤디와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민지씨앤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대금은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신탁사인("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시공사 ㈜신성건설이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 관계자 및 명칭**

| 구분 | | 회사명 | 주소 | 비 고 |
|---|---|---|---|---|
|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자 |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 |
| 시공사 | | ㈜ 신성건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 (금암동, 르네블루빌딩) | |
| 위탁사 | | ㈜ 민지씨앤디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83, 지하1층 (판암동, 판암퍼스트타워) | |
| 분양대행사 | | ㈜ 카사컨설팅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44, 205호 (신현동, 신현오피스텔) | |
| 감리자 | 건축 | ㈜ 구성건축사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4번길 46, 3층 305호 (둔산동, 1309빌딩) | |
| | 전기, 통신, 소방 | ㈜ 대청엔지니어링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씨동 325–비호 (오산동) | |
| | 설비 | 미래이앤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1,3층 301호 (장대동,삐아네따빙딩) | |
| | 토목 | ㈜ 태창이엔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34,2층 (월평동) | |

■ **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848번지 (TEL : 042–285–3337) 홈페이지 http://www.panamrenebleu.kr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무실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에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암역** 르네블루 | 상가분양 |

상가문의
042) **285-3337**

매도인겸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 시공사 **(주)신성건설** / 위탁자 **(주)민지씨앤디** / 분양대행사 **(주)카사컨설팅**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